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0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2
II . 검토의견	2
1.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2

I. 개 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4. 17.
- (3) 회 부 일 : 2026. 4.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II. 검토의견

1.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111조의2) ○ 적용요건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1)} 을 충족하는 자 *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의 합계가 각각 1대인 경우 *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 환급세액 - 휘발유·경유: 250원/ℓ - LPG부탄: 개별소비세 전액 ○ 연간 환급 한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3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 ²⁾)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31년 12월 31일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김승수의원안 2026. 4. 17. 발의(의안번호 18401),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2건의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³⁾에 따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연료비에 부과되었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임.

동 환급 특례는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5월 1일부터 연간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하여 시행되었으며, 2017년 4월 10일부터는 20만원으로 상향, 2022년 2월 15일부터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음.

동 특례의 적용기한은 8차례⁴⁾ 연장된 바 있으며,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규정되어 있음.

□ 최근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실적으로 보면, 2022년 이후 환급건수는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총 환급액은 2022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4)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1년, 2023년에 각각 연장

566억원에서 2024년 593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5년 577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임. 유종별로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LPG부탄, 경유 순임.

[유종별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환급건수	환급액	환급건수	환급액	환급건수	환급액	환급건수	환급액
휘발유	432,426	54,618	434,432	57,973	428,498	58,124	417,039	56,046
경유	813	88	745	97	728	93	684	81
LPG부탄	20,645	1,928	18,913	1,641	16,923	1,551	15,047	1,576
계	453,884	56,635	454,090	59,711	446,149	59,767	432,770	57,703

자료: 국세청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동 특례 제도는 유류세 인하의 역진성을 보완하면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단일 수 있음.

유류세의 직접적인 인하를 통한 세제 지원은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그 혜택이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량이나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동 특례 제도는 서민경제 활성화 효과가 인정되는

등 조세정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⁵⁾.

둘째, 경형자동차의 경우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큰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지속적인 시행은 에너지 절약, 도심 주차난 해결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계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6월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차종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계
소형		204,802	23,000	2,887,516	80,265	3,195,583
중형		13,214,253	468,642	372,878	20,287	14,076,060
대형		6,691,676	94,451	379,247	48,198	7,213,572
경형	일반 (1,000CC 이하)	2,102,968	32,962	51,183	162	2,187,275
	초소형 (250CC 이하)	2,123	-	1,735	11	3,869
계		22,215,822	619,055	3,692,559	148,923	26,676,359

자료: 국토교통부

5) 한국개발연구원(KDI),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2021. 9.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2027년 585억원(휘발유 567억원, 경유 1억원, LPG부탄 17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2,924억원(연평균 585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567	△567	△567	△567	△567	△2,835	△567
	경유	△1	△1	△1	△1	△1	△4	△1
개별소비세	LPG부탄	△17	△17	△17	△17	△17	△85	△17
전체		△585	△585	△585	△585	△585	△2,924	△5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동 개정안은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2031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